

대구광역시달서구 사회적고립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

2025. 7. 17.
복지문화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안 건 명: 대구광역시달서구 사회적고립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- 제 출 자: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(행복나눔과)
- 제출일자: 2025. 7. 4.(금)
- 회부일자: 2025. 7. 4.(금)
- 상정 및 의결: 제313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문화위원회(2025. 7. 17.)

1. 제안이유

- 상위법령인 「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일부개정에 따라 고독사 정의를 명확히 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고독사 정의 정비 (안 제2조제2호)
 - (당초) 가족,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자살, 병사 등의 이유로 임종을 맞고,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뒤에 발견되는
 - (변경) 「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
 - ※ 상위법령의 내용을 그대로 기재하기보다는 준용함이 바람직함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
 - 「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조
- 비용추계: 비대상
- 입법예고(2025. 5. 21.~2025. 6. 10.)결과: 의견 없음

5. 전문위원 검토의견 요지

-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고독사의 정의에서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을 제외한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안 제2조의 정의에서 ‘고독사’ 규정을 「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르도록 규정하는 것으로, 조례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6. 질의·답변 및 토론 요지: “특이사항 없음”

7. 심사결과: 원안가결